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요지 공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한 사업조정 권고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요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에 다음과 같이 2019. 8. 1.부터 3년간 코스트코 하남점의 품목·수량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다.

1. 야채 6종(배추·무·깻잎·상추·쪽각·아욱) 및 오징어(국산생물), 담배, 종량제 봉투, 경량패딩(하남 중소기업인 취급 브랜드)을 판매하지 않는다.
2. 청과 3종(사과·배·수박) 및 양파, 깻마늘, 한우, 고등어는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국산 소주·맥주 및 라면(유탕면류)은 묶음으로 판매한다.
3. 가구류의 시즌판매 횟수를 연 1회(8주 이내)로 제한한다.
4. 주차장 무료 개방은 차량 당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무료배달 서비스 및 판촉·광고 인쇄물의 배포를 일부 제한한다.